#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88

발의연월일: 2021. 11. 9.

발 의 자:한병도·이형석·홍성국

강준현 · 오영훈 · 이원택

김승원 · 김민석 · 이용빈

고용진 · 양기대 · 허 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난 7월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후 21개월째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연속하여 이어지고 있음.

또한 2019년 말 기준 국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50.2%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의 52%, 카드 사용액은 72%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 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다시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일으키며 악순환으로 나타남.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가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은 정책을 추진할 때,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 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 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 를 구축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시·군·구 및 시·도의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의 종합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부터 제8조까지).

- 다.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수립한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 ·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구활력지원협 약 체결을 규정함(안 제11조).
- 마.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력하여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12조).
- 바.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14조).
- 사. 주민등록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하여 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정책 대상으로 삼고,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아. 청년 및 중장년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정기적 교류 촉진 등의 관련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자.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노후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

지).

- 차.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
  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31조).
- 타.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3 3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구 및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이하 "시·군·구"라고 한다) 중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쇠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생활인구"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4세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5. "중장년"이란 제4호에서 말하는 청년 이외의 성인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중장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제3조(기본방향)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는 지역 주도의 시·군·구 기본계획 및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기본계획 및 시·도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6조에 따른 시·군·구 기본계획, 제7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시·도 기본계획은 시·군·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 기본계획은 시·도 기본계획을 바 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기본계획 및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 가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기본계획 및 시·군·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이하 "시·군·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 ② 시·군·구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 3. 시·군·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 4. 시·도 재정지원 및 국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 5. 제12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6. 제16조에 따른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 7. 제11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관한 사항
  - 8. 시·군·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시·군·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10조에 따른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군·구 기본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⑦ 시·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 5개년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1. 시·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 2.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 3.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 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관할 시·군·구 간 생활권 연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5.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에 관한 방 아
- 6. 제16조에 따른 시·도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 7. 시·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시·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10조에 따른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도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⑦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도 기본계획 및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 하 "국가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 2. 시·도 기본계획 및 시·군·구 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 4. 국가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 5.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 나 변경된 국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

- 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⑦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 가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다.
  - 1.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인구감소지역 관련 중앙행정기관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4. 시·도 기본계획과 시·군·구 기본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에 관한 사항
  -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이 인구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 6. 제11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위원회 의결에 따른 관련 정책의 부처별 추진현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 대표자로한다.
- ⑥ 위촉위원은 인구감소문제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⑦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① 그 밖에 위원회,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시·도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 위

- 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 1. 제7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6조에 따른 시·군 ·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 2. 제31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 위원회와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 ③ 시·도와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도 위원회와 시·군·구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도 위원회와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3장 중앙-자치단체간,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 제11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활력지원협약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 시·도 기본계획, 시·군·구 기본계획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간에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구활력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계획을 일괄하여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정적인 예산 편성과 규제개선 등의 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범위 및 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 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같은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권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도 기본계획및 시·군·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생활권을 구성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교육·의료·환경·복지·문화·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도시와 교류·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 간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1. 도-농교류 촉진사업 및 프로그램
- 2. 농촌체험활동, 지역자원조사 활동 지원
- 3. 그 밖에 도시와 농촌지역 인구감소지역 간 다양한 교류활동

#### 제4장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제14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 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도 기본계획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제16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7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3.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협력의 활 성화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 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청년 정착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청년일자리를 확충하여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임금의 일 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
  -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하는 사업

-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택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
- 4.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 제19조(중장년 정착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에 중장년층의 정착을 촉진하여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 알선 및 정보제공
  - 2. 창업에 필요한 자금 기술 컨설팅 지원
  - 3.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비용 지원
  - 4. 정기적인 방문·교류 촉진 프로그램의 운영
  -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장년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 제20조(복지·환경여건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이용·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안심·생활공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건강, 안전, 편의 관련 정보통신기술 또는 사물인터넷 기반의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의 개발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있다.

##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 제22조(보육시설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시·도의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도의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할지역 내 학교에 교육재정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 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는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방과후학교"라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인은 「의료법」 제 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지역 내 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인구감소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 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자를 위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이하 "방문진료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만성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주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치료등을 행하는 제도(이하 "마을주치의제도"라 한다)를 도입・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마을주치의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25조(주거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취 득 및 우선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 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문화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 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도서관법」 제5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 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전시 등을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특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접근성 보장
  - 2.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등의 사항
  -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8조(노후시설의 정비 및 유휴시설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

- 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폐교재산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및 복합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 · 지원 · 관리

- 제29조(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기본계획, 시·도 기본계획,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제9조제9항의 인구감소대응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 제30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31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 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 적 점검 및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

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시·도 위원회에 제출하여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 2. 국가 기본계획, 시·도 기본계획,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는 경우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2조(우수사례의 발굴·확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포상·홍보
  - 2.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
  -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제33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6.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과 연계되어야한다.

제7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